

2026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I 개요

1. 목적

- 가. 학생에게 전공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함
 나. 실습기관에 전공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제공하여 대학과의 산학협력 관계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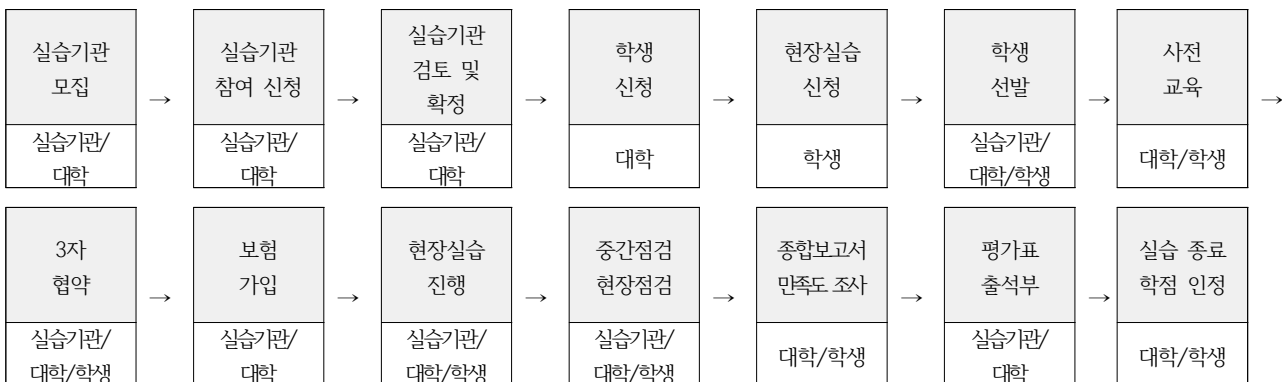
2. 운영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실습기관 모집 및 확정	2026.10.12.(월) ~ 11.23.(월)	. 기업 모집 안내
학생 신청	10.19.(월) ~ 12. 4.(금) 13:00	. 실습기관 공지
		. 학생 모집 안내
학생 선발	~ 12.18.(금)	.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실습기관 진행)
현장실습학기제 준비	12.21.(월) ~ 12.31.(목)	. 실습생 사전 교육(2026.12.28.(월) 14:00) ※ 장소: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R102호)
		. 3자 협약(대학↔학생↔실습기관) 체결
		. 상해보험 가입(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2027. 1. 1.(금) ~ 2.28.(일)	. 실습기관 현장점검
		. 증빙 서류 제출(중간점검서, 종합보고서 등)
		. 학점 인정(2~3학점)
실습지원비(대학) 지급	2027. 2월 중	

※ 위 일정은 대학 및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습생 사전 교육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3. 운영 단계



4.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구분	세부 내용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직무 관련 교육 비율 10%~25%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비율 25% 초과

5. 실습 기간 및 시간

가. 실습 기간: 2027. 1. 1.(금) ~ 2.28.(일) ※ 총 2개월

나. 실습 시간

- 1)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주 5일을 기준으로 운영함
 ※ 실습기관의 전일제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준으로 운영함
- 2)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며, 연장 운영 시 1주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함
 ※ 1주 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함
- 3)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은 운영을 제한함
 ※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은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6. 실습기관 점검

가. 신규 기업은 사전 서면점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은 사전 현장점검을 시행함

다. 신규 기업 및 기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시행함

7. 보험 가입

가. 실습 시작 전 상해보험(대학)과 산재보험(실습기관)은 필수로 가입해야 함

나.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고, 실습 시작 후 1주일 내 대학에 제출해야 함

8. 휴일 보장 및 출석 관리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나. 실습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 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의무 수행일
-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일
-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단,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기관, 학생,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시행함

다. 기계작동 및 실험 기반 실습 등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하에 실시되어야 함

라. 공휴일, 휴일(추가적 유급휴일 포함)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해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시행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 관리함

마.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실습기관의 운영 계획에 따른 실습 기간(또는 일수)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시행함

1) 재택실습은 출석 일수로 인정함

2)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의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함

9. 3자 협약

가. 대상: 대학 ↔ 학생 ↔ 실습기관

나. 일자: 학생 선발 ~ 실습 시작 전

다. 방법: 온라인(e-mail) 진행

라. 진행 절차

1	협약서 초안 작성 및 확인	· 3자 확인 후 내용 확정
2	대학 및 학생 협약서 날인 후 실습기관 송부	
3	실습기관 직인 날인 후 2부(대학, 학생) 회신	· 대학 ↔ 학생 ↔ 실습기관 각 1부 보관

10. 실습지원비

가.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함

나.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학을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은 제한함

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실습기관 실습지원비+대학 실습지원비)을 선지급한 경우, 대학은 대학 실습지원비(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실습 시간×25%)를 실습 정상 종료 후 2개월 내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단, 실습기관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5%(직무 수행 비율)만 학생에게 지급한 경우 대학은 대학 실습지원비를 실습기관에 미지급함

3) 학생 실습지원비 예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실습기관 100%(교육 비율 포함) 이상 지급	2,236,300원	· 10,700원*209시간 = 2,236,300원
실습기관 75%(교육 비율 미포함) 이상 지급	1,677,225원	· 10,700원*209시간*75% = 1,677,225원

※ 교육 비율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님

4) 대학 실습지원비 예시

가) 대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실습기관 중 실습지원비를 100% 이상 지급하는 기업

※ 실습지원비 100% 이상: 월 2,236,300원

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현황

구분	직무 수행 비율	교육 비율	금액	비고
표준	75%	25%	1,027,200원	· 10,700원*48시간*8주*25% = 1,027,200원

현장실습학기제			(8주)	· 10,700원*209시간*2개월*25% = 1,118,150원
			1,118,150원 (2개월)	

※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 10,700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이며, 그 외의 경우 1일 실습 시간에 따라 지급함

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무 수행 비율의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한 경우, 대학은 **대학 실습지원비(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실습 시간×25%)**를 실습 정상 종료 후 2개월 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현황

직무 수행 비율	교육 비율	주차별 금액	산출 근거
70%	30%	359,520원	· 10,700원*48시간*70% = 359,520원
60%	40%	308,160원	· 10,700원*48시간*60% = 308,160원
50%	50%	256,880원	· 10,700원*48시간*50% = 256,880원

※ 이외의 직무 수행 비율 실습지원비는 개별 산정하여 지급함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이며, 그 외의 경우 1일 실습 시간에 따라 지급함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 정상 종료 후, 대학에서 실습 기간에 따라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함
예시) 8주: 1,027,220원 / 2개월: 1,118,150원 등

마.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 시간 수, 직무 수행 실습 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 시간 수, 직무 수행 실습 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3) 직무 수행 실습 시간: (전체 실습 시간-교육 시간)

바.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소득세 과세 여부 안내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7조에 따라 지급받은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1. 기타 사항: 프로그램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5-36호, 2025. 12. 22. 시행)에 따라 진행함

Ⅱ 실습기관

1. 자격 및 요건

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

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관

다. 실습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실습기관)」 근거

- 1)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2)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 관리를 담당할 현장 교육 담당자를 배치할 것
- 6) 그 외 이 고시를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라. 실습기관은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1) 실습생(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 시간을 배정해 직무 교육을 운영해야 함
- 2) 교육 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함
- 3)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배정해 운영하고, 교육 시간과 실습 시간 비율을 기관 참여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4) 배정된 교육 시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

2. 불인정 기준

가.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및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관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다.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라.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1) 소비, 향락, 근로자 파견 및 공급하는 기업
- 2)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한 기업
- 3) 다단계 기업
- 4)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기업

3. 신청 서류

순번	구분	대상
1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전체 기관
2	사전 서면점검서	신규 기관
3	기업 사업자등록증	신규 기관

※ 신청 방법: 이메일(smuseoulintern@gmail.com, 상명대 현장실습) 제출

4. 참여 혜택

구분	세부 내용
우수 인재 확보	· 참여 대상: 실습직무와 전공 적합성이 있는 3~4학년 재학생
대학 실습지원비 지급(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선지급한 경우, 실습 정상 종료 후 대학에서 실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25% 지급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 당 1마일리지 적립

Ⅲ 학생

1. 참여 대상

가. (2026학년도 2학기 학적 기준) 3학년 및 4학년 1학기 재학생

※ (2026학년도 2학기 학적 기준)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참여 제한(실습 기간 종료일이 학위수여식 이후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함)

※ 2027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예정자는 실습 종료 후 휴학 신청 요망

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이 가능한 재학생

다. 실습 직무와 전공 적합성을 갖춘 재학생

2. 불인정 기준

가. 초과학기생/휴학생/유예생/수료생/(2026학년도 2학기 학적 기준) 4학년 2학기 재학생

나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재학생

다. 실습기관을 직접 모집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

3. 단과대학 및 전공 현황

단과대학	전공명
인문사회과학대학	· 인문콘텐츠학부: 역사콘텐츠전공, 지적재산권전공, 문헌정보학전공, 한일문화콘텐츠전공
	· 공간환경학부, 행정학부, 가족복지학과, 국가안보학과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경영경제대학	·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융합공과대학	· 지능·데이터융합학부: 휴먼AI공학전공, 핀테크전공·빅데이터융합전공·스마트생산전공
	· SW융합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지능IoT융합전공, 게임전공, 애니메이션전공
	·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전공, 화학에너지공학전공, 화공신소재전공, 식품영양학전공
문화예술대학	· 의류학과
	· 스포츠무용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무용예술전공
	· 미술학부: 조형예술전공, 생활예술전공
	· 음악학부

※ 단과대학 및 전공 설명자료: <https://www.smu.ac.kr/kor/edu/seoul01.do>

Ⅳ 문의처

·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 / 02-2287-7176

· 카카오톡 채널: sangmyungintern

· 홈페이지: <https://intern.smu.ac.kr/intern/index.do>